

□ 2026년도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수종사자 교통안전교육(8시간) 이수 기준

- 교통안전교육을 총 8시간 이수해주시길 바랍니다.(1~3안 중 선택)
  - <1안> 강화교육(8시간) 1회 수강
  - <2안> 현장 보수교육(4시간) 1회+**위험물질 온라인 보수교육(4시간) 1회**
  - <3안> 현장 보수교육(4시간) 2회

※ 경북 소속 위험물질 운송차량 운수종사자는 무사고, 무벌점 기간에 관계 없이 **위험물질 온라인 보수교육(4시간) 1회 수강 가능**

○ **관련 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등)**

- ② 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 3.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신설 2020. 12. 29.>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의2(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소유자 등의 의무 등)**

- ① 도로운송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중 최대 적재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차량의 소유자(「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자동차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시스템과 무선통신이 가능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위치 정보의 수집 등이 가능한 이동 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 한다)를 차량에 장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 운송 시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감시가 필요한 위험물질의 종류 및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최대 적재량 기준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